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2. 26.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9. 2. 18. 김영신, 채재선의원 외 3인

나. 회부일자 : 2009. 2. 20.

다. 상정일자 : 제14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9. 2. 26)

상정, 심사, 수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영신 의원)

가. 제안이유

- 창전동 3-243번지일대 와우근린공원내 와우산 배드민턴장 시설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우리구 조례 제714호(2008.7.31)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2008.11.1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외벽과 지붕만 설치되어 있을 뿐 바닥과 바람 막음시설이 완벽하지 않고 편익시설이 미설치 되어 사용인들로 하여금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 또한 사용료 징수 3개월 전부터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용인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사용료를 납부한 주민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냉난방, 탈의실, 샤워실 설치 및 바닥, 바람 막음시설 보완 시까지 사용료 징수를 유예하고자 동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조례 제71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항 중 “3개월이 지난”을 “바닥, 바람 막음시설 및 편의시설(냉난방, 탈의실, 샤워실)의 사용승인 다음”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

3. 검토보고의 요지 (한두호 전문위원)

- 공공체육시설인 와우산 배드민턴장 사용을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시설사용에 있어 동호회 회원과 일반주민과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사용료도 타자치구에 비해 저렴하여 적정하다고 하겠으나
- 외벽과 지붕만 설치되어 있을 뿐 바닥과 바람 막음시설이 미비하고 편익 시설로 냉난방, 탈의실, 샤워실이 미설치되어 있어 사용인들로 하여금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2008.11.1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일부 사용인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사용료를 납부한 주민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미비시설물 보완 및 편익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미비 시설물 보완 및 편익시설 설치 시까지 사용료 징수를 유예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일반인들의 이용불편과 배드민턴장 내에서 이용질서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시설관리는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 타 : 없음